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9년 2월 19일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귀중

우리는 첨부된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결산서는 주석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경영진이 작성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주석 2에서 기술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에는 해당 상황에서 결산서의 작성을 위해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영진은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결산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결산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결산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결산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관의 결산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결산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기관의 결산서는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세입과 세출을 주석 2에서 기술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과 배포의 제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산서는 복지관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산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규제기관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B동 304호

우 덕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기 범

